

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

▣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집합투자규약 변경 전·후 비교표

- 다 음 -

항목	변경전	변경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3 항	<신설>	10. 클래스 Ce 수익증권: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으며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11. 클래스 CW 수익증권: 판매회사의 Wrap Account 보유한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
제 10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1 항	<신설>	10. 클래스 Ce 수익증권 11. 클래스 CW 수익증권
제 17 조(투자대상자산 등)1 항	법 시행령 제 26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	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
제 39 조(보수)3 항	<신설>	(클래스 Ce)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7.00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5.00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5 (클래스 CW)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7.00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00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5
제 41 조(환매수수료) 2 항	1. 클래스 A , 클래스 C1, 클래스 C2, 클래스 C3, 클래스 C4, 클래스 C5, 클래스 C-I, 클래스 I 및 클래스 S 수익증권 가.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	1. 클래스 A , 클래스 C1, 클래스 C2, 클래스 C3, 클래스 C4, 클래스 C5, 클래스 C-I, 클래스 I, 클래스 S , 클래스 Ce 및 클래스 CW 수익증권 가.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

-끝-